

IMSE IMSE-CI-004	지 침 서	제정일자	2001. 07. 14
		개정일자	2020. 03. 20
	및 인증표시 사용기준	개정번호	1
		페이지	1 / 7

1. 목적

본 지침은 인증문구 및 마크(인정마크 및 IMSE 인증마크)의 사용범위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인증을 획득한 고객이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있다.

2. 기관마크

IMSE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고객은 인증기관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기준 적용지침 인증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관마크를 사용한다.



3. 인증서 사용

IMSE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고객은 IMSE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게시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·변경할 수 없다.

4. 인증에 대한 문구 및 마크의 사용

4.1 사용기준

- 4.1.1 고객은 인증문구, 인증마크 및 IMSE 인증마크는 인증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, 인증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범위에 대해서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- 4.1.2 고객은 생산한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표준,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,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4.1.3 인증마크는 반드시 IMSE 인증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, 인증마크와

IMSE IMSE-CI-004	지 침 서	제정일자	2001. 07. 14
		개정일자	2020. 03. 20
	및 인증표시 사용기준	개정번호	1
		페이지	2 / 7

IMSE 인증마크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4.1.3.1 좌우 대칭의 경우



(품질/환경경영시스템 인증)

4.1.3.2 상하 대칭의 경우



(품질/환경경영시스템 인증)

4.2 사용방법

4.2.1 IMSE는 고객에게 인증에 대한 문구, 마크 사용 및 홍보방법 등에 대하여 인증서 발급통보서(IMSE-R-016)에 첨부하여 통보한다.

4.2.2 IMSE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고객은 문서, 송장, 광고 등에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규격, 인증번호 등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.

4.2.3 IMSE 인증을 획득한 고객은 고객의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 또는 검

IMSE IMSE-CI-004	지 침 서	제정일자	2001. 07. 14
		개정일자	2020. 03. 20
	및 인증표시 사용기준	개정번호	1
		페이지	3 / 7

사성적서에 IMSE의 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4.2.4 IMSE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고객은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,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,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4.2.4.1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

- ① 광고 또는 홍보물 :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, 명함 및 인증기관의 교재, 편지지, 브로슈어, 문서, 송장,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

4.2.4.2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
- ① 제품 또는 제품포장
- ②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
- ③ 깃발, 건물 또는 차량

4.2.5 인증문구 및 마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4.2.5.1 인증마크의 색상은 인증기관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기준 적용지침 인증표시의 사용 및 인증의 홍보에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

4.2.5.2 인증마크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위

4.2.5.3 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.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(가로:15mm, 세로:10mm)

4.2.5.4 인증마크 원본을 일정비율로 확대.축소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적 윤곽을 정확히 나타내야 한다.

4.2.6 IMSE는 인증 수행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수행범위에 대하여는 인증문구 및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한다.

4.2.7 IMSE는 인증문구 및 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획득한 고객이 광고, 카달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, 인증서 회수, 정정광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IMSE IMSE-CI-004	지 침 서	제정일자	2001. 07. 14
		개정일자	2020. 03. 20
	및 인증표시 사용기준	개정번호	1
		페이지	4 / 7

4.2.8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않은 고객은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관한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의 [별표] 과징금 부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분되며, 이러한 경우를 적발하는 때에는 즉시 KAB에 보고한다.

5. IAF MLA 마크 사용과 가입사실 표시

5.1 IMSE의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지원센터(KAB)는 경영시스템, 제품 및 서비스, 자격 및 기타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IAF의 목적에 부응하여, KAB는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(MLA)에 가입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IAF MLA 마크를 사용하거나, 가입사실 표시를 할 수 있다.

5.2 IAF MLA 마크 사용 기준

5.2.1 IAF MLA 마크



5.2.2 IMSE는 IAF MLA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KAB 마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, IAF MLA 마크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5.2.3 IAF MLA 마크는 인증서, 기안지, 견적서, 광고물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으나,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.

5.2.4 IMSE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해 IAF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IAF MLA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5.2.5 KAB의 IAF가 마크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IMSE도 IAF MLA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.

5.2.6 IMSE는 IAF MLA 마크 사용시 반드시 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.

IMSE IMSE-CI-004	지 침 서	제정일자	2001. 07. 14
		개정일자	2020. 03. 20
	및 인증표시 사용기준	개정번호	1
		페이지	5 / 7



[보기]





KAB-QC-XX, KAB-EC-XX



5.3 한글 표기의 경우

5.3.1 좌우 대칭(약칭표기)



	QMS에 대한 IAF MLA 가입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	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	EMS에 대한 IAF MLA 가입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	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5.3.2 좌우 대칭(정식 표기)



	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기관협력기구의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 가입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	
---	---	---



IMSE IMSE-CI-004	지 침 서	제정일자	2001. 07. 14
		개정일자	2020. 03. 20
	및 인증표시 사용기준	개정번호	1
		페이지	6 / 7

	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기관협력기구의 국제다자간상호인증협정 가입 인증기관에 의한 인정	
---	---	---

5.4 영문 표기의 경우

5.4.1 좌우 대칭(약칭표기)

	Accredited by Member of the IAF MLA for QMS	
---	---	---

	Accredited by Member of the IAF MLA for EMS	
---	---	---

5.4.2 좌우 대칭(정식 표기)

IMSE IMSE-CI-004	지 침 서	제정일자	2001. 07. 14
		개정일자	2020. 03. 20
	및 인증표시 사용기준	개정번호	1
		페이지	7 / 7

	<p>Accredited b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s</p>	
---	--	---

	<p>Accredited b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</p>	
--	--	---